

# IV

## 지역내총생산의 개념 및 용어해설

### Overview of the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1. 지역내총생산 추계개요	193
2. 지역내총생산 추계목적 및 필요성	194
3. 지역내총생산 작성체계	196
4. 추계항목	197
5. 주요개념 및 용어해설	200



## 1. 지역내총생산 추계개요

### 1) 지역내총생산이란?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 GRDP)은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 지역 내에서 새로이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합계액이다.

지역내총생산은 지역별·경제활동별로 발생된 생산측면의 부가가치(소득)이므로 발생한 소득이 지역간 이전을 통해 최종적으로 어느 지역 주민에게 귀착되었는가를 나타내 주는 분배측면의 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 2) 여러 가지 개념의 구분

#### ① 지역총생산(Gross Regional Product : GRP)

일정기간 동안의 일정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의하여 새로이 생산된 재화와 용역 가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내총생산(GRDP)은 일정지역 즉, 생산 활동이 이루어진 지역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지역총생산(GRP)은 “지역주민” 즉, 생산 활동을 하는 생산주체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②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 : GNP)

일국의 국민에 의해서 일정기간 동안 새로이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합계액을 의미한다.

#### ③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 GDP)

자국의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관계없이 일국에 거주하는 생산주체에 의해 새로이 생산되어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합계액을 의미한다.

### 3) 지역총생산, 국민총생산, 국내총생산, 지역내총생산의 관계

주민개념에 의한 지역소득을 지역민총생산(GRP)이라고 하는데 이는 국민총생산(GNP)에 대응하는 지역단위 개념으로서 지역주민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은 그 소득이 어느 지역에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지역의 총생산에 포함시킨다. 이에 반해 지역내총생산은 국내총생산(GDP)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의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모두 지역내총생산에 계상한다.

지역소득은 GNP와 마찬가지로 UN이 권고한 국민계정(A System of National Account : SNA, 1993)의 개념 및 체계에 따라 생산·분배·지출 측면에서 각각 추계 할 수 있다. 『지역내총생산』은 그 중 생산측면의 지역소득으로서 해당 시·도에서 경제활동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되었는가를 나타내 주는 지표이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개념간의 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로 쓸 수 있다.

- $GNP = GDP + \text{해외부문 (대외 순수취 요소소득)}$
- $GDP = \sum GRDP$
- $GRP = GRDP + \text{역외부문(대역외 순수취 요소소득)}$

〈 지역계정(생산·지출·분배)지표의 포괄범위 〉

① 산출액	지 역 내 총 생 산 (GRDP)				중간 소비
② 지역내 총생산	비용자보수	영업잉여	순생산세	고정자본소모	
③ 지역민 총생산	지역외로부터의 순 요소 소득	비용자보수	영업잉여	순생산세	고정자본소모
④ 지역민 요소소득	지역외로부터의 순 요소 소득	비용자보수	영업잉여		
⑤ 지역내 총지출	민간최종 소비지출	정부최종 소비지출	총자본 형성	순이출 (이출-이입)	

## 2. 지역내총생산 추계목적 및 필요성

### 1) 추계목적

지역내총생산의 추계 목적은 첫째, 지역경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종합경제지표로서, 각종 지역관련 정책이나 계획의 수립 및 지역관련 연구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둘째, 지역경제 상호간의 비교분석과 균형있는 지역경제 개발모형을 설정하기 위함이다.

## 2) 실시근거

지역소득통계의 일부로서 작성되는 지역내총생산은 통계법에 의해 승인받은 통계로서 현재는 시·도 단위와 시·군·구 단위로 작성되고 있다. 시·도 단위는 통계청이 「지역별 소득(승인번호 10128호)」통계를 작성·공표하고 있고, 전라북도는 시·군 단위 통계로서 「전라북도 시·군 단위 지역내총생산(승인번호 21407호)」를 작성하고 있다.

## 3) 필요성

- ① 지방자치체의 실시에 따른 시·군 단위 통계수요에 대처
  - 자치단체의 각종 지역단위 개발계획의 수립 및 정책수요 급증
  - 지역정책성과 예측 등 각종 경제 분석 기초자료 필요
  - 시·군 단위 종합경제지표 필요
- ② 기초자치단체의 경제에 대한 분석 및 평가지표 필요

## 4) 기대효과

- ① 지역단위 개발계획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지역균형개발계획의 지표 → 낙후·성장지역 파악, 격차비교 등
  - 지역별 투자우선순위 선정기준 → 성장 유망지역 파악, 지역별 특화산업육성
- ② 각종 지역경제 분석 자료로 활용
  - 지역경제 종합지표 → 지역경제력 수준 종합 분석
  - 지역산업구조 분석 → 지역별 산업구성의 실태 파악
- ③ 국가·지역 계획 간의 연계자료
  - 국토종합개발계획 - 전라북도 종합개발계획 - 시·군 개발 계획간 연계
- ④ 기초자치단체별 경제규모 산출자료
  - 시·군별 경제규모, 산업구조 및 구성비, 경제성장률
  - 시·군별 산업특화도(입지상), 노동생산성, 자본 및 노동 집약도 등

### 3. 지역내총생산 작성체계

#### 1) 작성방법

국가경제 혹은 지역경제 전부를 빠짐없이 계량화한다는 것은 실로 방대한 작업일 뿐더러 어떤 측면에선 무모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해당 지역 내의 각 경제주체가 생산한 모든 유무형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량과 가격을 파악하여 집계해야 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모든 기초 자료가 빠짐없이 확보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모든 자료를 얻는다는 것은 어려울 뿐더러 또 가능하다 할지라도 엄청난 비용을 수반할 것임이 분명하다. 더욱이 경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태적 성격을 띄고 있어 특정 회계기간 동안의 경제활동 성과의 흐름을 일정 시점에서 정확히 파악하기란 난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주어진 예산의 제약 하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획득 가능한 자료를 파악·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계정을 작성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내총생산 통계를 작성하는 작업은 유형의 수치를 계량화하여 집계하는 작업뿐 아니라, 무형의 수치까지를 추정해내야 하는 추계작업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추계작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계정체계가 규정하는 계정작성의 기본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 현실의 경제현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토대로 추계작업에 이용될 수많은 기초 자료를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 할 것이다.

#### 2) 추계대상

지역내총생산이 무엇을 추계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생산과 소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인간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수많은 종류의 재화와 서비스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재화와 서비스는 자연 그대로의 것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인간의 생산활동을 통해 공급된다.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는 생산자 자신에 의해 소비되거나 타인에게 판매되어 소비된다.

이때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에서 그것을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되어 소비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공제한 것을 부가가치라고 하며 이러한 부가가치는 화폐가치로 환산되어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다. 이렇게 일정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생산활동

의 결과 창출된 부가가치의 합을 총생산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며 이것이 지역내총생산의 추계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총생산은 생산 활동에 참여한 각 경제주체들에게 소득으로 분배되며 궁극적으로 이것이 인간의 생활을 위해 지출된다. 결국 분배된 소득의 합 즉 총소득은 총생산과 같으며 총지출과도 같게 된다. 이를 소득의 3면 등가원칙이라고 하며 이런 이유로 우리는 지역내총생산과 지역소득이라는 용어가 유사한 의미로 쓰이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동일한 객체를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의 문제와도 같은 것이며, 총소득을 파악하려 할 때 포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생산측면에서 이를 추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4. 추계항목

### 1) 산 출 액

산출액(Output)이란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총 화폐평가액을 말하는데 생산주체별로 산출물의 형태와 비용구조가 같지 않으므로 산출액의 정의도 생산주체별로 다르다.

산업의 산출액은 일정기간 중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에 판매하는 가격(생산자 가격, '93SNA에서는 기초가격)으로 평가한 것을 말한다. 이때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는 그것이 실제 판매되었거나 재고로 남아 있거나와 관계없이 생산시점에서 평가된다.

그러나 재화생산의 경우엔 생산량에 단가를 곱하여 산출액을 구할 수 있지만 도소매업과 같은 유통업이나 수량화가 곤란한 서비스를 생산하는 업종의 경우엔 별도의 정의가 필요하다.

즉, 장기간에 걸쳐 활동이 이루어지는 건설업은 투입된 비용을 산출액으로 계상하고, 도소매업의 경우엔 판매가격과 구입가격의 차액을 산출액으로 계상하며, 운수업은 운수 활동에 따른 영업수익을 산출액으로 처리한다. 서비스업은 요금 수수료 등 서비스제공의 대가를 산출액으로 계상한다.

금융업의 경우엔 송금, 추심, 환전 등에 따른 실제 서비스판매수입과 수취 재산소득에서 지급이자를 차감해서 구해지는 금융중개서비스료를 산출액으로 보며, 보험업의 경우

엔 수취보험료와 보험준비금의 투자수익에서 지급보험금과 필요준비금 추가적립액을 차감한 보험 서비스료를 산출액으로 본다.

정부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서비스생산자의 경우에는 생산하는 서비스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어서 평가하기가 곤란하므로 생산에 투입된 총 투입비용을 산출액으로 계상한다.

가사서비스생산자는 서비스생산에 투입되는 것이 노동뿐이므로 서비스제공의 대가로 받은 급여를 산출액으로 본다.

## 2) 중간소비

중간소비는 생산을 위해 투입된 내용년수 1년 이하의 비 내구재와 서비스로 구성되는데 생산에 직접 투입된 재료비뿐만 아니라 상품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와 상품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접대비 등 일체의 직·간접비용을 포함한다.

정부가 구입하는 군사장비는 파괴용 군사무기와 내구생산재로 구분하여 전자는 중간소비로 처리하고, 후자는 고정자본형성으로 처리한다.

중간소비와 자본형성의 구분은 투입된 재화와 서비스가 회계기간 중에 소진 되는가 혹은 회계기간 이후에도 남아 이익을 발생시키는가에 달려있다. 수선비의 경우 고정자산을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시키는데 소요된 것이라면 중간소비에 계상되나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성능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것이라면 자본형성으로 분류된다.

## 3) 부가가치 및 구성항목

부가가치는 생산 활동에 의해 새로이 창출된 가치로서 산출액에서 중간소비를 뺀 것이다. 부가가치는 고정자본소모,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생산세(168SNA에서의 간접세)와 생산보조금(공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고정자본소모는 생산과정에서 소모된 자본재의 감소분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각 제도부문에게 분배된다.

### 가) 피용자보수

피용자보수는 고용주가 피용자에게 지급한 현금 또는 현물형태의 급여는 물론 피용자를 위하여 사회보장기금·연금기금 및 보험에 납부한 고용주부담금을 포함한다. 현금

급여는 피용자가 노동에 대한 대가로 받은 일체의 금전을 의미하는데, 실제 수취한 금액 외에 원천과세액도 포함하며 의료보험료와 같은 사회보장기금이나 연금기금에 대한 피용자분담금도 피용자보수에 포함된다. 또한 고객이 서비스업 종사원에게 직접 지급한 봉사료도 고용주가 서비스 판매대가로 일단 수취하였다가 현금급여형태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다.

현물급여는 고용주가 피용자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 재화와 서비스로서 주로 피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피용자에게 혜택이 되는 것이기는 하나 고용주에게도 이득이 되는 작업복의 제공, 직원휴게실의 마련, 정기 건강진단 등에 대한 지출은 피용자보수로 계상하지 않고 생산과정의 중간소비로 처리한다. 그밖에 피용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기에 적절한 퇴직급여충당금도 피용자보수에 포함한다.

#### 나) 영업잉여

영업잉여는 산업부문의 생산 활동에 참여한 자본에 대한 대가이며 부가가치총액에서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순생산세(생산세 - 생산보조금)를 뺀 잔액과 같다. 이 영업잉여는 생산주체의 투입구조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에서만 발생하며 정부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서비스생산자의 부가가치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 다) 고정자본소모

고정자본소모는 모든 유형자산이 경제적으로 일정한 예상수명을 가진다는 개념에 근거한 것이다. 즉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의 경우 생산과정에서의 사용, 시간의 경과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노후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언젠가는 새로운 고정자산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 수준의 생산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소모된 고정자본의 가치만큼을 부가가치 중에서 분리하여 비축해 두는데, 그 부분을 고정자본소모라고 한다.

#### 라) 생산세(공제 생산보조금)

생산세는 93SNA에서 새로이 도입된 개념으로서 세율차이에 따른 생산구조의 왜곡 방지와 순수한 생산자 몫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생산물세와 기타생산세로 구분하여 추계한다. 생산물세는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 등과 같이 생산자에게 부과되어

생산비에 포함됨으로써 결국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조세를 말한다.

한편 생산보조금은 산업진흥 또는 제품의 시장가격 인하 등 정부의 정책목적을 위하여 정부가 생산자에 지급함으로써 생산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것인데 예로서는 정부의 탄가안정대책에 대한 적자보전과 여객선안전관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이 있다. 그러나 기업이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가운데서도 생산 활동과 관계없이 수취한 부분은 경상이전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투자의 목적이나 수해·화재 등에 따른 자본재의 손실보전을 위한 부분은 자본이전으로 처리하고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가게 및 가게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가 정부로부터 수취한 교부금은 보조금이 아닌 경상이전 거래로 분류한다.

## 5. 주요개념 및 용어해설

### 1) 생산의 포괄범위

수많은 이질적 경제주체들로 구성된 국민경제의 복잡하고 다양한 거래관계에서 생산되고 처분되는 각양각색의 재화와 서비스를 평가 집계하기 위해서는 생산의 포괄범위에 관한 엄밀한 정의가 필요하다.

UN 통계국의 국민계정체계(SNA)는 생산의 범위를『본업으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 및 부업으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 중 교환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원칙 하에서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원시적 생산물이 생산의 범위에서 제외되게 되는데 이 경우 시장경제와 분업이 발달되지 못하여 자가소비를 위한 생산의 비중이 높은 개발도상국의 생산수준이 저평가되는 문제가 발생된다. 이점을 감안하여 SNA에서는 생산자의 생계를 위한 생산 활동은 그것이 비록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생산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이상의 정의를 요약하면

- ① 원시생산자 즉 농업, 임업, 어업, 광업에 종사하는 생산자의 경우에 원시생산물은 교환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생산에 포함시키나 비 원시 생산물은 교환된 것만을 포함시킨다.
- ② 비원시생산자가 본업으로 생산한 것은 교환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생산에 포함

시키지만 부업으로 생산한 원시생산물 전부와 교환되지 않은 비원시생산물은 제외시킨다.

결론적으로 모든 생산자가 부업으로 생산하여 직접 소비한 비원시생산물을 제외하고는 모든 생산물이 교환여부에 관계없이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한편 1993년 개정된 SNA에서는 전체 생산 및 소비의 종합적인 측정과 금융계정, 대외거래계정 등 타 계정의 추정오차를 줄이기 위해 불법생산, 은닉생산 및 지하경제도 생산에 포함시키도록 생산의 포괄범위를 일부 수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료수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관계로 계정작성에 실제로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2) 기록시점

거래는 일정시점에서 발생하여 곧바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에 걸쳐 거래행위가 지속되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위해서는 이를 기록하는 시점과 평가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판매계약의 성립, 제품의 인도, 대금의 수령, 회계상의 처리 등이 시차를 두고 일어나고 특히 이러한 일련의 거래가 두 회계기간에 걸쳐 있을 경우 거래시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국민계정에서는 요구급발생주의원칙(要需給發生主義原則 ; receivable - payable basis)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대금의 수급시기와 관계없이 재화와 서비스의 법적 양도시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생산계정에서의 거래의 기록시점을 보면 산출액의 기록에서 생산된 재화는 판매되거나 재고로 남아 있거나에 관계없이 생산시점에서 산출액에 계상되고, 특성상 재고가 없는 서비스는 제공시점에서 기록된다.

중간소비의 기록에서 산업의 경우 중간재로 쓰일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에 실제 투입되는 시점에서 기록되고, 정부서비스생산자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서비스생산자의 경우 중간재로 쓰일 재화와 서비스가 구입되는 시점에서 기록된다.

### 3) 시장가격과 기초가격 및 요소가격

국민계정에서 파악하는 생산물은 원칙적으로 시장가격으로 평가한다. 이는 경제학적으로 볼 때 시장가격이 소비자의 한계효용과 생산자의 한계비용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이를 통한 거래규모의 평가가 국민경제의 수준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고, 시장가격이 여타의 평가기준보다 파악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3 SNA에서는 산출물을 기초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세금(보조금)이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는 것이 생산성 분석이나 생산자의 의사결정 분석 등에 보다 유용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며 기초가격은 구매자가격에서 순생산물세(생산물세 - 보조금)와 유통마진을 공제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지역내총생산에서도 '93SNA의 권고내용을 반영하여 기초가격 부가가치와 시장가격 부가가치를 모두 알아볼 수 있도록 제표하고 있다.

또한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고 자가소비한 생산물, 자가 소유주택의 임료 등은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동일상품의 기초가격으로 평가하고, 자가 건설과 같이 그 품질 수준의 다양성으로 인해 적절한 시장가격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와 정부서비스나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서비스 등과 같이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실제 투입된 비용으로 평가한다.

생산을 위해서는 각종 생산요소들의 투입이 필요하며 이들 생산요소에 지급된 비용은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투입된 생산요소 혹은 각 산업의 생산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생산을 요소비용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부문이 시장경제에 관여하고 있는 통상의 경제제도 하에서는 생산물세 와 보조금이 존재하며 이는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때의 시장가격에는 생산요소의 제공자에게 지급된 비용이외에 생산자가 납부한 각종 생산물세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과 시장가격에 의한 국민소득 간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생산물세-보조금 = 시장가격에 의한 국민소득

#### 4) 기록원칙

산출액은 시장가격 중 생산자가격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93SNA에서는 세금이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기초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중간소비는 산업의 경우에는 실제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에 투입되는 시점에서, 정부 서비스생산자나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서비스생산자의 경우에는 재화와 서비스가 구입되는 시점에서의 구매자가격으로 평가한다.

#### 5) 당해년가격과 기준년가격

지역내총생산에는 당해년의 경상가격으로 평가한 당해년가격 계열과 어느 특정 년도의 가격으로 평가한 기준년가격 계열의 두 가지가 있다. 이와 같이 당해년가격 이외에 기준년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은 물가가 변동하는 한 당해년의 경상가격으로 평가한 지역소득 계열이 진정한 지역주민의 복지수준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당해년가격 기준은 생산물량에 당해년가격을 곱한 값이므로 두 시점 사이에 있어 그 수준의 단순비교만으로는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물량변동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그리고 당해년가격과 기준년가격에 의한 지역소득 계열은 각각 서로 다른 독자적인 이용목적에 지니고 있다. 즉, 지역경제의 구조변동이나 지역소득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중요성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동하였는가를 분석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년가격 계열을 이용하고 장기간에 걸친 물량수준 및 구조변동을 관찰하려면 기준년가격 계열을 이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준년가격에 의한 지역소득의 평가에는 많은 제약과 문제점이 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기준년가격 계열을 작성하는데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하나는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수량과 가격에 대한 완벽한 자료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끊임없이 변동하는 경제 환경 하에서 생멸하는 수많은 재화와 서비스의 종류별 수량과 가격에 대한 정보를 빠짐없이 얻는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기준년가격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과 비교시점의 재화와 서비스가 동질의 가치를 갖는다는 전제이다. 이런 전제하에서만 두 시점 사이의 생산된 물량수준의 변동이 가격변동을 제거한 소득수준의 변동을 대변하게 되는데 기술진보와 신제품개발, 품질개선이 일반화된 현실 경제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질

이 같은 경우는 많지 않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기준년가격 평가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두 시점 사이의 소득수준 비교를 할 수 있는 차선의 방법으로써 기준년가격 계열의 작성은 의미를 가지며 지역소득계정에서도 이를 채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추계가 가능한 부문도 생산물의 흐름으로 포착한 생산소득과 지출측면에서 본 지출소득 뿐이며 분배소득이나 저축, 조세지불 및 이전지불 등은 기준년가격에 의한 평가가 어려운 부문이다.

기준년가격 평가의 기준년으로 선택되는 해는 다음 기준년까지 가격평가의 기준이 되므로 경제적으로 정상적인 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바람직하지만 그해가 정상적인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은 실제 어려운 일이다. 또 기준년에서 멀어질수록 당해연도의 재화와 서비스를 적절히 평가하기가 어려워지므로 기준년간의 간격을 작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기준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개편작업과정이 필요함은 물론 개편에 필요한 수많은 기초자료의 확보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따라서 통상 10년, 혹은 5년을 주기로 기준년을 정하는데, 보통 1990년, 1995년처럼 연도의 끝자리 숫자가 0, 5인 연도를 기준년으로 하며 우리 나라는 5년을 주기로 기준년을 정하고 있다.

## 6) 디플레이터(Deflator)

당해년 가격으로 표시된 시계열지표에서 가격변동분을 제거한 기준년 가격을 구할 때 사용하는 가격지수를 디플레이터라고 한다. 이 경우 디플레이터는 소비자 물가지수나 생산자 물가지수 등 특정 가격지수가 될 수 있으나, 사후적으로 구해지는 것이 보편적이다. 즉 각 구성항목별로는 해당 물가지수를 디플레이터로 하여 실질치를 구하며, 추계결과상의 디플레이터는 『당해년 가격 ÷ 기준년가격 × 100』으로 산출한다. 지역내총생산 디플레이터는 매우 광범위하여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에 관련된 가격지수는 모두 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뿐만 아니라 임금 등 가격지수까지도 이용된다.